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4
----------	-----

2021. 7. 1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7. 13.)  
“ 원안채택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도시환경국장 김희주 )

-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2대) 및 엘리베이터(1대) 설치
- 현황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
- 도로(특수도로)시설은 폐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6,519	증) 10,781	17,300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93. 3. 18.)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철도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 정거장 선형 및 면적변경 면적: 6,519㎡ → 17,300㎡ 증) 10,781㎡	-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2대) 및 엘리베이터(1대) 설치 - 현황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면적 (㎡)						
기정	중로	3	56	11.65~16.52	3,698	특수 도로	170	청담동 72일대	청담동 57일대	지하 도로	
폐지	중로	3	56	11.65~16.52	3,698	특수 도로	170	청담동 72일대	청담동 57일대	지하 도로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기능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도로	특수도로	- 특수도로(지하도로) 폐지 면적: 3,698㎡	- 도로의 기능이 특수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시설(철도)로 편입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담역 1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2대) 및 엘리베이터(1대) 설치하고, 철도시설(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며, 도로(특수도로1)시설은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및 동법 시행령3)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제출된 안건으로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은 바 상세 설명이 요구됨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기능별 구분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중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사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6,519	증) 10,781	17,300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93. 3. 18.)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철도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 정거장 선형 및 면적변경 면적: 6,519㎡ → 17,300㎡ 증) 10,781㎡	-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 및 엘리베이터(1대) 설치 - 현황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면적 (㎡)						
기정	중로	3	56	11.65~16.52	3,698	특수 도로	170	청담동 72일대	청담동 57일대	지하 도로	
폐지	중로	3	56	11.65~16.52	3,698	특수 도로	170	청담동 72일대	청담동 57일대	지하 도로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기능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도로	특수도로	- 특수도로(지하도로) 폐지 면적: 3,698㎡	- 도로의 기능이 특수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시설(철도)로 편입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 또한, 대상지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와 관계기관(부서)와 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상세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 청취 사항(반영여부) 등의 설명도 요구됨

□ 추진경위

- 1993. 3.18.: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1993-77호)
- 1999.10.25.: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1999-333호)
- 2021. 5.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요청(서울교통공사→도시계획과)
- 2021. 5.10.: 관계기관(부서) 협의(서울시 시설계획과 외 13개부서)
- 2021. 5.1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 2021. 5.24.: 조치계획 제출 요청(도시계획과→서울교통공사)
- 2021. 6. 8.: 조치계획 제출(서울교통공사→도시계획과)

□ 협의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로계획과, 도시철도토목부 (의견 없음)
- 강남구: 사회복지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부동산 정보과, 재난안전과 (의견 없음)
-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시설계획과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철도) 중 청담정거장 기정선 확인 후 반영 필요</li> <li>- 1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부분 외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각각의 증감면적 및 증감사유 보완 필요</li> <li>- 청담역 14번 출구를 포함한 경기고교 앞 사거리 지하보도 도시계획시설(특수도로)로 변경결정(서고 제1999-333호)되어 있는 바, 해당 시설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치 필요</li> </ul>	반 영
환경과(강남구)	관련법에 따른 일반사항	반 영
건설관리과(강남구)	관련법에 따른 일반사항	반 영

- 아울러, 구의회 의견 청취 후의 계획 및 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시비 확보 여부 등, 공사시기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를 하셨는데 주민의견은 없었는지
- 답 변 : 14일 동안 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한건도 없었음
- 질 의 :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 답 변 : 우리 구는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하고 설치공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채택”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부.